연말정산 세무







세무사는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로 납세자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사는 모름지기 높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와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많은 세법책과 실무서를 발간하면서 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원보다는 관성적인 출판에 그치고 저자 편의가 앞서 사업현장의 회원님을 만족시키는데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도서출판까지 혁신하여 사업현장의 회원들의 직무 요령, 리스크 관리 및 컨설팅기법 등을 망라해 회원들이 책상머리에 두고 무시로 회원을 돕는 '실사구시 지침서'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 세목별 기본서, 신고실무도 회원친화적으로 형식과 콘텐츠도 바꾸고 회원님이 전문적인 핵심직무를 수행할 때 유용한 길잡이가 될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를 새롭게 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는 사업현장에서 부딪히는 핵심주제 50개를 추출하고 각 테마마다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관계법령, 예규 및 판례의 나열 아닌 직무요령과 리스크 관리, 컨설팅 기법 등 권위있는 전문 집필자의 노하우까지 담아냈습니다.

조세출판사에 큰 획을 그을 책이 될 '한국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앞으로 개정과 증보를 거듭하면서 사업현장의 회원님을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완성시키는 기념비적인 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남다른 열정과 전문성으로 '한국세무사회 테마별 실무서'가 탄생하는데 함께해주시는 집필진 세무사님과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님께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11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 계 회

실무사례중심의 연말정산 세무

>>>> 2024년	· 적용되는 연말정산 관련 주요내용 ······ 9
0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9
0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9
0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10
0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10
05.	자원봉사용역 특례기부금 가액 현실화10
0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10
07.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1
08.	자녀세액공제 확대11
09.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12
10.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2
11.	고액기부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12
[조세특례	제한법] 13
0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13
0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13
INCE 10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및 기한연장13
0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14
05	시요카드 등 사용근애 소드고제 저용대산 조저

2024년 연말정산 Q&A15
01.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15
02. 비과세 - 실비변상적 급여 15
03. 비과세 - 국외근로소득 16
04. 비과세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등 17
05. 비과세 - 식대19
06.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20
07. 비과세 - 학자금 20
08. 비과세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20
09. 인적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21
10. 인적공제 - 직계존속 23
11. 인적공제 - 직계비속 24
12. 인적공제 - 형제자매 24
13.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24
14.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25
15.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6
16.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7
17.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27
18.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29
1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30
2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1. 자녀세액공제 34

CONTENTS

22.	연금계좌 세액공제	35
23.	보험료 세액공제	35
24.	의료비 세액공제	36
25.	교육비 세액공제 ····	38
26.	기부금 세액공제	40
27.	월세 세액공제	41
>>>> 제1장 근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론편)	43
TIIA TJ. 77	A CTIOL MINIMA	40
세1실 근도	소득자의 연말정산	43
01.	연말정산 의의	43
02.	연말정산 흐름	44
03.	연말정산의무자 ·····	46
04.	연말정산의 시기	49
05.	연말정산 세액의 징수 및 환급	52
0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발급	54
0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납부	54
08.	연말정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56
09.	지급명세서 제출	59
10. 1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62
11.	기타 세무서 제출서류	68
12.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68

제2절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73
01. 근로소득	73
02. 일 용근 로소득 ·····	81
03. 비과세 근로소득	84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특례	107
05.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계산	111
0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귀속시기)	112
07. 근로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시기	113
08.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115
09.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115
>>>> 제2장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전편) ····································	
01. 연말정산 사전준비	125
02. 연말정산 제출서류	129
03. 편리한 연말정산	133
0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39
>>>> 제3장 연말정산 세액의 계산·······	149
01. 세액계산의 흐름	150

제1절 소득공제1	51
01. 근로소득공제 ····· 1	51
02. 종합소득공제	52
03. 특별소득공제 ····· 14	58
04. 그 밖의 소득공제	67
05. 소득공제 종합한도 18	80
제2절 세액과 감면18	81
01. 산출세액	81
02. 종합소득 결정세액	82
03. 세액감면	82
제3절 세액공제 19	91
01.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 19	
02.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19	
03. 이외 세액공제 20	
0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 21	12
제4장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4대보험 정산 21	15
01 7HQ 2	15

2024년 적용되는연말정산 관련주요내용

0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제12조)

근로자(종교인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추가 (소득법 제12조)

육아휴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또한 월 한도 15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

〈적용시기 : 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소득령 제16조)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법 제12조)

종업원,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금액을 연 50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연 7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인사업자 당사자 및 친족관계에 있는자,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 특수관계인은 비과세 대상자에서 제외

〈적용시기 : 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자원봉사용역 특례기부금 가액 현실화 (소득령 제81조)

특례기부금 중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종전 봉사일수 1일당 5만원에서 1일당 8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 20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0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령 제108조약)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종전 기준시가 9억원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확대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07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종전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주택요건은 종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요건을 완화함. 또한, 차입자가 신규 차입 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이되도록 확대.

(적용시기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8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제59조의2)

적용대상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종전 자녀 한정)로 확대하고, 공제세액을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종전 30만원), 3명 : 35만원 (종전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09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소득법 제59조의4)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을 종전 총급여액 7천 만원 이하인자에서 급여제한을 삭제하여 확대하였고, 본인에 대한 의료비와 동일하 게 공제한도 제한대상에서 제외함(다만, 산후조리원 지급비용에 대한 한도는 연간 200만원으로 동일)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제118조의5)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적용시기 :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액기부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제59조의4)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40%로 신설

〈적용시기: 2024. 12. 31.까지 한시적용〉

[조세특례제한법]

0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종전 연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 으로 상향

〈적용시기 :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02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제95조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기준을 종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에서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종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0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및 기한연장 (조특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소득요건을 종전 종합소득 금액 6천만원(15% 적용)에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15%적용)이하로 확대하고 월 세액 공제대상금액을 1,000만원으로 확대 및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0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조특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10%를 신설(증가분이란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또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은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하도록 규정

〈적용기한: 2025.12.31. 까지〉

0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조정 (조특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가상자산사 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수·매도·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 금액을 제외하도 록 조정

〈적용시기 :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